

의안번호	2200663
의 퇴 인	유동수의원
회 답 일	2024.06.27.
추계번호	24D08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민방위사태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안 제3조)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민방위사태 또는 도발·위협 예·경보 체계구축, 민방위사태 또는 도발·위협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사회재난으로 정의되는 경우, 민방위사태 또는 도발·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제25조의2제1항제3호), 재난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제22조, 제71조 등),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제38조의2),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제66조)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민방위사태 또는 도발·위협 예·경보, 피해지원 등이 일부 수행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기존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신규 사업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의 취지는 2024년 5월28일부터 6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630여개가 확인되었고 6월 18일 기준 1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검토 중임
 - 개정안에 따라 향후 민방위사태¹⁾ 또는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지원의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될 수 있고 피해액 지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민방위사태 또는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피해 항목, 항목별 건수와 평균 피해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민방위사태 선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이었고 당시 인천광역시가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으로 인정받아 주택피해 복구,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였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